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광학기 의원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광학기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현행 「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」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기관·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
□ 그러나,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 유도과 확대를 위해 시민의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동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안 제7조제3항에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, 안 제7조제4항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기준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